



#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의원입법 발의안(案) 비교

이정택 연구위원, 김동겸 수석연구원

연혁

2017년 9월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이후,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세 건의 법안이 상정되어 있음. 세 건의 의원입법 발의안(案)은 법안의 제정목적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에 관한 내용은 대동소이함. 그러나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대상이 되는 민영의료보험의 범위 및 의료비의 정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실태조사, 벌칙조항 등에 있어 차이를 보임.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사보험정책협약체 구성 이후,<sup>1)</sup> 국민건강보험과 민영의료보험의 연계관리를 위한 세 건의 법안이 입법발의 되어있는 상황임
  - 2017년 12월 김상희 의원의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 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案)” 대표 발의 이후, 윤소하 의원과 김종석 의원 등의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음
- 세 건의 법안(案)은 법안 제정목적과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방향성은 대동소이함
  - 세 건의 법안 모두 실손의료보험이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야기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식 하에 국민의 의료비부담 절감과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음
  - 의료비 관리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료비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에 대해 조정하고 위원회에서 손해율 공시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함
    - 의료비 실태조사 항목으로는 ① 실손보험이 의료비 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② 요양급여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③ 비급여진료비용 현황, ④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지급 등에 관한 정보 등이 있음

1)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7. 9. 2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 추진”

〈표 1〉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1) 법안 제정목적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법률안 명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제정 목적	국민의료비·보험료 부담 완화, 국민건강 증진	민간의료보험의 공적관리, 국민의료비 부담 적정화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국민건강 증진

자료: 김상희 의원 대표발의(2017. 12. 29),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157); 윤소하 의원 대표발의(2018. 01. 25),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544); 김종석 의원 대표발의(2018. 02. 07),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814)

- 그러나 상기 법안들은 ①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식, ③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④ 벌칙조항 등 세부 실행방안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관리대상 및 의료비 범위)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은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을 실손의료보험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윤소하 의원안은 실손의료보험 외에 정액형 의료보험 까지를 포함시킴

- 김상희 의원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가입자·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비급여진료비용을 의료비로 정의하고 있으며, 김종석 의원안은 이들 비용 외에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금과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함시킴
  - 반면, 윤소하 의원안은 상기 비용 외 국민건강보험 및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까지 포괄함

〈표 2〉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2) 관리대상 민영의료보험 및 의료비 범위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민영보험 범위	실손의료보험	실손형 및 정액형 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
의료비 범위	요양급여비용(국민건강보험법), 비급여 의료비	김상희 의원(안)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 보험료	김상희 의원(안) +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 (위원회 구성) 세 법안 모두 위원회 구성을 통해 민영의료보험을 관리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위원회의 소속 및 구성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를 위한 위원회의 소속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고 있으나,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
  - 김상희 의원안과 윤소하 의원안에서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건복지부차관이 맡도록 하는 반면, 김종석 의원안에서는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구성 측면에서 볼 때, 김종석 의원안은 위원회 부위원장인 보건복지부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동수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나, 김상희 의원안<sup>2)</sup>과 윤소하 의원안<sup>3)</sup>에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자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위촉하도록 하고 있음

〈표 3〉 공사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3)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 위원회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명칭	공사의료보험 연계심의위원회	공사의료보험 연계관리위원회	공사의료보험연계위원회	
소속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복지부 산하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구성	구성인원	20명 이내	25명 이내	23명 이내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위원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부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부위원장이 각각 동수 임명
업무	○실태조사, 자료제출요구, 보장범위조정, 손해율산정방법, 민영보험정책개선 의견제시, 공사의료보험 중복지급 방지 등	○실태조사, 민영보험 보장범위 조정, 표준약관개정 권고, 손해율산정방법, 민간의료보험 정책개선 관련 의견제시 등	○공사의료보험 제도개선, 국민의료비 실태조사, 공사의료보험 관련 정보 공유 등	
위원회의 권고사항 및 의견제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 조정, 손해율 산정방법, 공·사의료보험관련 정책	좌동* *보장범위에 대한 권고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마련	좌동	

- 2)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함
- ①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②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③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 ④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 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⑥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⑦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연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 ① 소비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②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③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명
  - ④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
  - ⑤ 보건복지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각 1명
  - 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 및 같은 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⑦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 ⑧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명

- (실태조사 범위) 의료비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항목에는 실손보험이 의료비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요양급여대상 확대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비급여진료비용 현황 등이 있음
-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 지급에 관한 정보 등도 조사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표 4〉 공·사연계 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4) 실태조사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주기 (시행주체)	정기적, 필요 시 (보건복지부장관, 금융위원회)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	매년 1회 이상 (위원회)
조사항목	○ 실손보험이 의료비지출 및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 요양급여대상 확대가 실손 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 ○ 비급여 진료비용 현황	김상희 의원(안) +  건강보험 및 민영보험의 보험료수입 및 지급 현황	윤소하 의원(안) +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 및 초과금액 지급 정보

- (벌칙조항) 직무 상 취득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세 법안에서 모두 존재하나,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존재함
- 김상희 의원안과 김종석 의원안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sup>4)</sup> 윤소하 의원안은 이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이 없음

〈표 5〉 공·사연계 의료보험 연계에 관한 법률안 비교 - (5) 벌칙조항

구분	김상희 의원 대표 발의안(案)	윤소하 의원 대표 발의안(案)	김종석 의원 대표 발의안(案)
자료제출 사항	가입자 인적사항, 진료내역, 보험급여 내역, 민영보험 보험금 지급통계·보험료 등	좌동	김상희 의원(안)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지급내역, 요양급여부당 청구내역
벌칙	취득정보의 제공·누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자료미제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

4) 김상희 의원안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을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한정하고 하고 있으나(발의안 제14조), 김종석 의원안의 경우 자료 미제출 기관과 더불어 거짓 제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발의안 제21조)

- 향후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험회사, 의료기관, 감독 당국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의료비 관리방안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비급여 의료비의 관리·감독 부재와 이로 인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니 만큼 공·사 의료보험 연계 관리를 통해 비급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확립되어야 함 **kiri**